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1년도 신규과제 공고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신규 과제 공모 요약

1. Brain Pool 사업 (약 55개 과제)

- 초빙대상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최대 3년 ※ 재신청 가능
 -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신청 가능
 - ※ (유형1)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2. Brain Pool Plus 사업 (약 5개 과제)

- 초빙대상 :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
- 지원기간 : 최장 10년(2+3+3+2)
- 지원내용 :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 ※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2 Brain Pool (BP) 사업

1. 사업 목적

-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과학자를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정규직'으로 영입 시, 사업선정 후 해외 과학자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협약)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우대분야 :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등 신산업분야 과제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초빙대상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다.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최대 3년 ※ 재신청 가능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신청 가능

※ (유형1)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 신청 가능 분야>

- 기계·제조 분야 : ① 친환경·스마트 플랜트 기반기술, ②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③ 3D 프린팅 장비·소재 기술
- 농림수산·식품 분야 : ①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②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③ 동물 질병 통제 기술
- ICT·SW 분야 : 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② 초고속·초절전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제작 기술, ③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④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⑤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⑥ 지식정보보안기술

※ 2018년 기술수준평가결과 인력양성 및 유치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한 기술 분야

라.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 인건비 :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 ※ 해외우수과학자의 원 소속기관 연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수준 지급
- 연구활동비(유치경비) :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체재비, 국내외 출장여비, 학회참가비 및 논문게재료, 한국어 교육비,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포함
- 간접비 : 전담인력지원비, 기관 간접비 포함

유형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유치경비)	
【유형1】 단기지원	6~12개월 ※산업체 : 3~12개월 지원 가능 ※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해외우수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 지원	항공료, 이주비, 보험료, 국내외 출장여비, 학회 참석비 및 논문 게재료, 한국어 교육비, 자녀학비 (누리과정), 체재비 등 ※ 유형2에 한하여 체재비 (12백만원/년) 지원 가능	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유형2】 장기지원	최대 3년 ※ 재신청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55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연구소장 이상인 자
-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2 동시 지원 불가능
- 해외우수과학자
 - ①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
 - ② 박사학위 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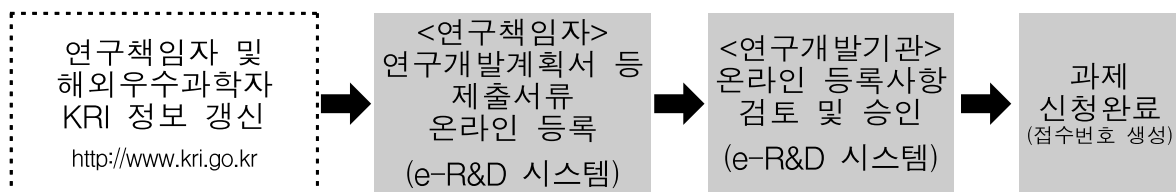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1.1.25.(월) ~ '21.8.31.(화)

나. 접수기간

- 1차 : '21.2.15.(월) ~ '21.2.26.(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2차(안) : '21.2.27.(토) ~ '21.4.30.(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3차(안) : '21.5.1.(토) ~ '20.6.30.(수)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4차(안) : '21.7.1.(목) ~ '21.8.31.(화)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 신청 마감일 18:00 이전까지 기관승인이 완료되어야 함(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됨)
- ※ 접수 마감일은 접속 증가로 인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 과제 선정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2~4차 접수 미개시 가능)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R&D 시스템)



- 연구개발기관이 우수한 해외우수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사항), 본인의 소속 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 사업 신청은 반드시 국내 연구책임자 e-R&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을 준수하여 시스템 상 과제신청 및 제출서류 탑재 확인 등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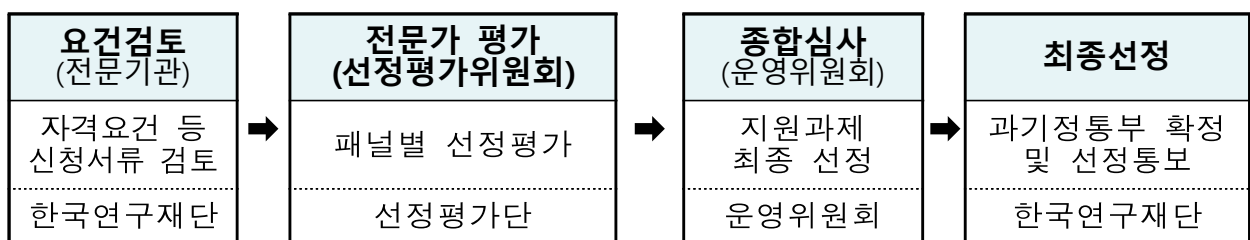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li style="padding-left: 20px;">*경력증명서는 기업체 신청과제에 한함 -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과제 선정 후 제출 서류(선정과제에 한함)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국내 현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보안서약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출</p> <p>※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p> <p>※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p> <p>※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p> <p>*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p> <p>※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p>

5.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 요건심사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우수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 전문가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평가를 통해 과제별 평균점수 80점 이상 과제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
-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나. 선정평가 기본방향

- 유치과학자 국적 다양화를 위해 1국(한국 제외)에서 각 선발시기별 총 선정자의 20% 초과 제한 가능
- 국제 한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한인·교포 최소 선정쿼터(30%) 적용

다. (유형1·2 공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평가 (3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 과학자 활용 필요성 	10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연구역량 등) 	10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10
해외 우수 과학자 연구 계획 (30)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연구기간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15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주거 등) 	15
해외 우수 과학자 역량 (40)	해외우수 과학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5
	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15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10
계			100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자(국내PI·해외과학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6.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추진내용
'21.1.25.(월)	2021년도 BP사업 신규과제 공고('21.1~8월까지)
'21.2.26.(금)	1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 3~4월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4.30.(금)	2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5~6월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6.30.(수)	3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7~8월	3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8.31(화)	4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9~10월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 가. 해외우수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 단,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 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예외 사업임
- 라. 선정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국 협약포기자(국내 PI 및 해외과학자)에 대해 동사업 3년 참여제한 패널티 부과 조치**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긴밀한 협의 필수
- 마. 선정 후 **중도 종료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업 공고시점으로부터 3년 간 연구책임자·해외연구자 동 사업 신청 제한**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인건비 및 초빙시기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 필수
- 바. 선정 후 연구개시한 과제의 경우,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는 체재비, 이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유형2 장기유형에 해당)
- 사. 유형1의 해외우수과학자의 주거는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2는 해외우수과학자의 체재비(최대 12,000천원/년) 실비 지원
- 아.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 참조
 * (www.nrf.re.kr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분류-교육·인력양성사업-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해외우수과학자유치(Brain Pool)사업 → 공지사항)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문) 02-3460-5624, 5629, 5647 / E-mail : yokang@nrf.re.kr, salee@nrf.re.kr ☎ (영문) E-mail : bpkrf@nrf.re.kr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문의 ☎ 042-869-7744

3 Brain Pool Plus (BP+) 사업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초빙대상 :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 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내부	기타	연구비	체재비	기타경비	
최장 10년 (2+3 +3+2)	기관 자체 부담 정규직 인건비 제외 추가 인건비 지원 가능	외부, 학생, 연구지원인력 등 ※전담 행정인력 (연구지원인력) 배정 필수이며 인건비 지원 가능	초기 실험실 구축비, 재료비 등	월세·전세 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유치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 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 해외에서 동반 입국한 참여연구자의 체재비 및 기타경비 지원 가능
- ※ 기관 자체 부담 인건비는 기관의 정규직 수준 이상 매칭 필수
-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하(중견·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체)·70% 이하(중견)·75%(중소) 이하 지원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5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연구책임자 :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급
 -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 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유치 연구자 :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 유치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신청(유치)기관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야 함 (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1.1.25.(월) ~ '21.8.31.(화)

나. 접수기간

○ 1차 : '21.2.15.(월) ~ '21.2.26.(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2차(안) : '21.2.27.(토) ~ '21.4.30.(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3차(안) : '21.5.1.(토) ~ '20.6.30.(수)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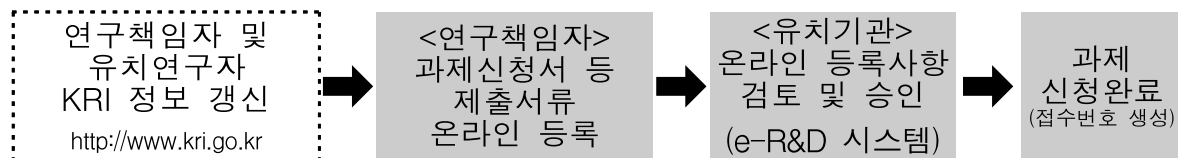
○ 4차(안) : '21.7.1.(목) ~ '21.8.31.(화)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신청 마감일 18:00 이전까지 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유치기관 미승인 시 미접수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접속 증가로 인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과제 선정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2~4차 접수 미개시 가능)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R&D 시스템)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포함)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개 기관에서 1과제 신청 시 인사담당부서장 접수가 원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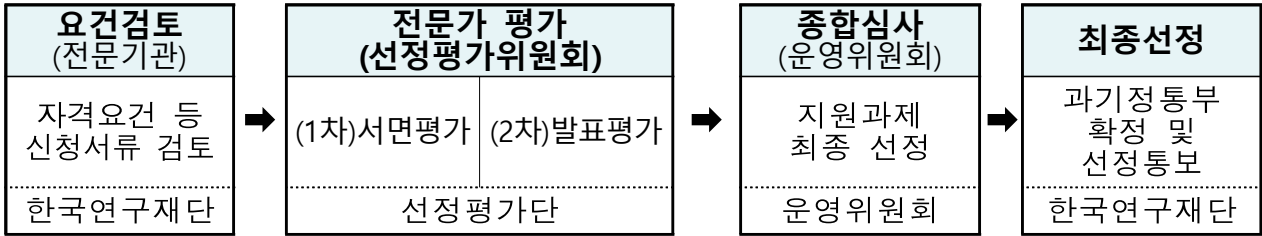
※ 1개 기관에서 2과제 이상 신청 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인사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로 접수하여 등록(단, 신청서 상 연구책임자는 모두 인사담당부서장이어야 함)

라.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신청서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동의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 ※ 논문 첫 페이지와 특허 서지사항 제출은 필수이며 이외는 선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5.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 접수 결과에 따라 상기 절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요건심사 : 유치기관 및 유치연구자 자격요건 검토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중대한 오기 또는 미제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 등으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탈락
- (1차)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 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평가 실시
- (2차)발표평가
 -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서면평가위원 포함 가능)에서 발표평가
 - ※ 평가위원은 대면평가 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가감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기관은 수락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면대면(面對面) 방식으로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 대면평가가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대체 가능
- 종합심사
 - 유치기관 지원(인건비 수준, 산업계 겸임 허용, 가족 정착 지원, 초기 연구실 구축 등) 및 활용계획(기관의 발전계획과 연계, 인력양성 및 우수 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 등), 유치 필요성, 유치 후보 연구자의 연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 (선정과제 해당)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 유치연구자 채용 확정 후 유치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 연구비 산출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수정·보완사항 도출
 - 연구계획서 보완·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지원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및 우수성 • 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20
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역량(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역량,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 • 연구기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 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20
연구자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연구자의 대우(신분(최고 호봉, 산업계 겸직허용 등), 급여, 복리후생), 연구비 매칭 지원, 본 사업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및 충실성 • 정착 지원체계(행정전담인력, 자녀학교·배우자 정착지원 등) • 물리적 연구환경(실험실, 장비 등) 지원계획 및 충실성 • 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20
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특허, 연구실적,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경험, 수상경력 등(5년 내 논문,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10
합계		100

○ (선정과제 해당)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

항목	세부평가 내용
연구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발전 가능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교육(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연구자의(연구팀)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6. 향후 추진일정(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일정	내용
'21.1.25.(월)	• 2021년도 BP+사업 공고('21.1~8월까지)
'21.2.26.(금)	• 1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8:00 마감)
'21.3~4월	•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 선정
'21.4.30.(금)	• 2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8:00 마감)
'21.5~6월	•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 선정
'21.6.30.(수)	• 3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8:00 마감)
'21.7~8월	• 3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 선정
'21.8.31(화)	• 4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8:00 마감)
'21.9~10월	•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 선정

7.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등

- 가. 유치기관은 선정통보일 이후 '21. 10월말 이내 채용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이후 연내 유치 연구자 입국 및 연구계획서 제출)
 ※ 단, 유치기관의 채용 및 임용 절차 상황 또는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나.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성 연구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등)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제한함
- 다.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하나 본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책임자로 변경된 경우는 3책 5공 대상에 포함
- 라.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마. 연구 목적과 내용 불명확, 작성 오기와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문선웅 연구원 ☎ 02-3460-5622 / E-mail : moonlight@nrf.re.kr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문의 ☎ 042-869-7744